

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6. 08. 20.(목)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강준현·유영하·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 강준현·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에는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공정거래법 제119조) 공정위 소속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용해서는 안됨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단,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자료를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의 입증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열람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나 열람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두어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소송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알게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의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 및 공개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

이와 함께,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개선하였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를 기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2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 자료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짐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료확보 부담이 경감되고, 법 위반에 따라 입은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다음으로,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예: 무혐의)에 대해서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제화된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통해서 재신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재심위의 설치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며, ▲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 재조사 요청 대상·절차나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신고인의 재조사요청권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재조사요청권에 대한 신고인의 인식이 제고되고, 신고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과제 관련

현행 하도급법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도 법원의 요구에 공정위가 응할 명시적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법원에 자료 제출 시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공정위의 자료제출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기업의 입증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 하도급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19조 비밀엄수의무 조항 준용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에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전반을 준용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제도 전반*도 하도급법에 준용하여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기업의 입증자료 확보 및 금전적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자료제출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상 동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문(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을 준용하도록 개정

②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합리화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처분시효를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처분시효가 줄어들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정절차 장기화로 인해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다만, 적법·유효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분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취하·각하·중지(소제기로 인한)시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대로 처분시효 계산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화*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제72조 제1항)도 신고사건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규정

분쟁조정 기간을 고려한 공정위 처분시효 합리화를 통해,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공정위 처분을 통한 법 위반행위 시정이 더욱 조화롭게 작동됨으로써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

** (하도급법) ▲자료제출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처분시효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

<붙임1>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121)
	심판총괄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남동길 (044-200-4134)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명현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0-4958)

현행	개정안
<신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 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① -----

-----그 소송당사자가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그 자료의 제출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 (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신 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 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
-----그 당사자 또는 공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 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제110조 · 제111조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
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2. _____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인-----

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는-----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 ----- ----- -----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u>신고일 부터 3년 <단서 신설></u>	1. ----- -----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는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

-----.

1. -----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2. (현행과 같음)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삭 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삭 제>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

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삭 제>

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